

전주지방법원 2022. 9. 28 선고 2021나13748(본소), 2021나13755(반소) 판결 [건물철거 및
토지인도 등 ·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2. 9. 28 선고 2021나13748(본소), 2021나13755(반소)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1. 11. 17 선고 2020가단14897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무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

담당변호사 최연수

변론 종결 2022. 7. 20.

판결 선고 2022. 9. 28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. 11. 17. 선고 2020가단14897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피고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고 한다)에게,

- 1) 전주시 완산구 C 대 31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, 3, 4, 5,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(가) 부분 53㎡ 및 별지1 도면 표시 10, 11, 12, 13,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46.5㎡를 철거하고, 위 (가), (나)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- 2) 2016. 1. 15.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,

- 1) 전주시 완산구 C 대 314㎡ 중 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건물 6㎡를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- 2) 767,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2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- 3) 2021. 9. 8.부터 위 가항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,6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.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

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별지 포함).

[추가하는 부분]

반소와 관련하여, 원고는 소유권 취득 당시 측량에 기초하여 점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고의로 피고의 땅을 침범한 것은 아닌 점, 침범한 토지의 면적은 전체 314㎡ 중 6㎡에 불과한 점,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반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.

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,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(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9다277157 판결 등 참조).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,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,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(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다5310 판결 등 참조).

보건대,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이 사건 (가) 부분 지상 건물 부분이 철거되고 위 토지가 피고에게 반환될 경우 피고는 피고의 현재 소유 토지와 원고의 현재 소유 토지의 실제 경계에 따라서 피고의 현재 소유 토지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므로, 피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한 목적이 주관적으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는 점,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원고가 2016년경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 위에 건물을 증축하여 원고의 법정지상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철거,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,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것인 점

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반소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미리

판사김범준

판사신태광

별지